

# 종교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유럽의 정체성\*

이 옥 연 | 서울대학교

대다수의 유럽 국가는 “하나의 유럽”에 동참하려는 높은 의지를 보이지만, 유럽연합 헌법조약의 인준을 둘러싼 갈등에서 드러난 “하나의 유럽”에 가린 이면도 동시에 목격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역내 극진세력이 주도하는 강압적 “하나의 유럽”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 결과, 유럽의 주축을 형성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내 기본 이념인 자유, 평등 및 법치를 완전하게 내재화시킨 일부 유럽국가에 서조차 이러한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유럽의 정체성을 둘러싼 극단적 요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정치쟁점을 핵심 정강으로 채택하는 정치세력이 그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정당정치의 균열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첫째, 유럽의 지역통합을 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도형화해서 대조한 후 리스본 조약의 함의와 연계해 유럽의 다면성을 논의하고, 둘째, 탈세속화된 유럽 사회의 다면성을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간 연결고리 속에서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종교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그리고 유럽의 정체성을 조립하는 정당집단 정치의 균열구조를 현 시점에서 살피면서 결론을 대신하여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종교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유럽의 정체성, 유럽의 다면성, 탈세속화된 유럽

## I. 들어가는 말

근본적으로 ‘유럽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유럽’의 소속과 더불어 ‘유럽’의 구성원에 대한 답변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러나 ‘유럽’ 소속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요건에 관해 설령 합의를 통해 도출한다고 해서 ‘유럽’의 의미가 완결되지 않는다. 나아가 ‘유럽’을 구

---

\*이 논문의 초고를 2010년 한국유럽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며, 용어 선정, 논문 구성 및 논문 제목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함.

성하는 자격 요건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정비되더라도 그에 따라 규정된 ‘유럽’이 반드시 하나로 통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유럽’의 의미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인지되고 통용될 뿐 아니라 “하나의 유럽”은 유럽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기제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적으로 유럽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도 또한 지속적으로, 그리고 개별국가뿐 아니라 유럽차원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더해간다. 이미 대서양 건너 W. 부시 행정부시기에 테러집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we, us)’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호소를 거부한 유럽 국가를 ‘비핵심(non-core) 유럽’으로 규탄한 사례도 목격했다 (Cooper 2003, 165-172).<sup>2)</sup>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외압으로 인한 “하나의 유럽”에 대한 허상보다 역내 극진세력이 주도하는 강압적 “하나의 유럽”이 빈번하게 관찰된다는 사실에 있다. 그 결과 “하나의 유럽”을 주장하는 근거가 “하나의 유럽”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정신인 인권존중과 민주주의에 토대를 두는 보편성과 문화-종교적 유산인 다양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모순을 야기한다.

“하나의 유럽”을 상정한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풍부하다(조홍식 1998; 김세원 2004; 강원택·조홍식 2009; 이규영 2010). 대다수 선행연구들은 지역통합을 크게 경제-무역-재정-통화정책의 관점 또는 정치-군사-안보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발전 전망을 제시한다(Fligstein 2008).<sup>3)</sup> 더불어 유럽의 정체성에 토대를 제공하는 유산에 초점을 맞추는 선행연구들은 지역통합의 미래를 지역통합

- 
- 1) 대표적 사례로 리스본조약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삽입한 수정조항을 들 수 있다.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cultural, religious and humanist inheritance of Europe, from which have developed the universal values of the inviolable and inalienable rights of the human person, freedom, democracy, equality and the rule of law,” 즉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문화적 유산이나 종교적 유산, 그리고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 평등, 그리고 법치로부터 기원을 찾고 있다. <http://www.lisbon-treaty.org/wcm/the-lisbon-treaty/treaty-on-european-union-and-comments/preamble.html> (검색일: 2010/12/01).
  - 2) 이러한 유럽의 단일화 요구는 헝가리의 경우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역내에서는 새로운 유럽(New Europe)으로 부상했으나 이라크전쟁에 대한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횡대서양관계에서는 비핵심 유럽(non-core Europe)으로 전락했다는 피터 에스터하즈(Péter Esterházy)의 인용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구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 헝가리 작가로 헝가리어 식으로는 성이 먼저 표기되어야 하나, 영어 표기 순으로 따랐고 이에 따라 발성도 영어 표기를 따랐다.
  - 3) 특히 플리그스타인(2008)의 2장(“Constructing Markets and Politics: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Union, 1958-2004”)을 들 수 있다.

의 과거에 의해 처방하는 경향을 보인다(Habermas 2008).<sup>4)</sup> 또한 두 선행연구의 접근법을 결부해서 지역통합의 과거가 현재를 거쳐 미래로 발전하는 근거를 정당정치체계로부터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선행연구도 발견할 수 있다(Stjernø 2004).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다각적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유럽화된 정치과정에 투영된 “탈세속화된 유럽”의 정체성과 유럽 다면성을 조립하는 정치풍경을 그려내는 초벌작업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0년 현재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자료에 의하면, 유라시아-중부유럽 및 동유럽(48퍼센트) 지역 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비율이 서유럽(96퍼센트), 남·북미(71퍼센트)에는 못 미치지만 아시아-태평양(41퍼센트)보다 앞서는 현상을 가리켜 “하나의 유럽”에 동참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sup>5)</sup> 그렇다면 2004년 유럽연합헌법조약의 인준을 둘러싼 갈등에서 드러난 “하나의 유럽”에 가린 이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특히 역내 극진세력이 주도하는 강압적 “하나의 유럽”이 빈번하게 관찰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 결과, 유럽의 주축을 형성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내 기본 이념인 자유, 평등 및 법치를 완전하게 내재화시킨 일부 유럽국가에서조차 이러한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유럽의 정체성을 둘러싼 극단적 요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정치쟁점을 핵심 정강으로 채택하는 정치세력이 그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정당 집단 정치의 균열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첫째, 유럽의 지역통합을 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도형화해서 대조한 후 리스본 조약의 합의와 연계해 유럽의 다면성을 논의하고, 둘째, 탈세속화된 유럽 사회의 다면성을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간 연결고리 속에서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종교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그리고 유럽의 정체성을 조립하는 정당 집단 정치의 균열구조를 현 시점에서 살피면서 결론을 대신하여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4) 특히 하버마스(2008)의 2장(“How to Answer the Ethical Question: Derrida and Religion”)과 5장(“What is meant by a ‘Post-Secular Society’? A Discussion on Islam in Europe”)을 들 수 있다.

5) [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iw10/FIW\\_2010\\_Overview\\_Essay.pdf](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iw10/FIW_2010_Overview_Essay.pdf)(검색일: 2010/12/01) 전 세계 국가의 46퍼센트가량 자유민주주의 또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 II. 유럽의 다면성: 리스본 조약과 지역통합

유럽의 지역통합이 진전되면서 유럽의 정체성과 유럽의 다면성 간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한편으로 유럽의 정체성은 복수의 영역에서 다면성을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유럽”을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장, 하나의 화폐” 등을 통해 형상화시키는데 기여한다(강원택·조홍식 2009, 450; 조홍식 2010, 81).<sup>6)</sup> 비록 “하나의 유럽”에 있어서 완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구체적 결과물로서 리스본조약의 주요 골자를 크게 역외정책분야, 역내 의사결정절차, 그리고 인권헌장 및 다양한 정책에 대한 피드백(feedback) 창구 채택으로 나눌 수 있다.<sup>7)</sup> 우선 역외정책분야의 변화는 첫째, 유럽연합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과 더불어 유럽공동체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European Community: TEC), 즉 로마조약(1957/1993)을 수정하는 단일한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TFEU) 체제를 결합하여 출범하면서 유럽연합의 독자적 조약체결 권한을 부여했다. 둘째,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EU)로부터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를 분리하고 종전에 6개월 임기의 순환직인 유럽이사회 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을 2.5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변경했다. 셋째, 더불어 기존의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CFSP High Representative)와 대외문제 집행위원(External Relations Commissioner)을 통합하여 유럽연합 외무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를 신설하여 유럽연합의 외무대표직을 단일화했다. 넷째,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을 신설하여 회원국 외무부뿐 아니라 각료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사무총장실 관련부처와 공조하는 단일한 창구를 제공했다.

다음으로 역내 의사결정절차에서 첫째, 분리된 유럽이사회와 유럽연합이사회에 공통적

6) 특히 조홍식(2010)은 공공영역에서 유럽 또는 유럽연합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데 단일화폐인 유로의 기여를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적용해 논의하고 있다. “... 아비투스는 ‘제2의 본성’과 같은 것으로서 친숙한 사회 세계의 습관, 실천과 일상을 의미 ... 달리 표현하자면 한 개인이 살아온 역사가 체질화 되어있는 것인데, 하나의 새로운 본성처럼 너무 자신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와 역사의 산물이라고 의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용한 부르디외(Bourdieu 1979)를 참조할 것.

7) 2007년 12월에 체결되어 각 회원국의 인준을 거쳐 2009년 12월에 발효됨으로써 유럽연합의 3기 동체제(pillar)로 분화된 체계를 종식시키고 단일화된 체계를 출범시켰다.

으로 일반 입법절차로서 2014년 11월 이후부터 55%의 회원국, 즉 15개국과 65%의 유럽 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찬성해야 법이 제정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이중 다수결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입법과정을 중단시키려면, 4개국과 35% 유권자의 반대가 필요하다. 단, 집행위원회나 유럽연합 외무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발안이 없는 유럽연합이사회의 발안에 대해서는 72%의 회원국, 즉 19개국과 65%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찬성이 필요하다. 둘째, 그 결과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이사회 내 회원국에 배정하는 가중치가 재조정되었다.<sup>8)</sup> 새로운 표결방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과도기체제를 거쳐 정착되는데, 만약 이 과도기 동안 회원국이 니스조약의 기존 표결방식을 요청한다면 채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셋째, 단, 조세, 사회보장, 외교, 국방, 경찰작전 협조 등 일부 분야에 제한해 만장일치 방식을 유보했다. 또한 유럽의회와 일반 입법절차로서 공동결정(co-decision) 방식을 법무, 내무 등 분야에서는 연장했다. 넷째, 유럽의회의 각 회원국 당 의석배정을 재조정하여 2014년부터 '체감적 비례대표성(degressive proportionality)'에 의거해 큰 나라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배정된다. 다섯째, 현재 각 회원국에 하나씩 배분되는 집행위원직 수도 27개에서 2014년 이후 줄이기로 결정했으나, 아일랜드 국민투표에 의해 일차적으로 리스본조약이 부결되자 다시 각 회원국 당 집행위원직이 배정되는 종전의 방식으로 환원했다. 또한 신설된 유럽연합 외무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동시에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직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민주주의의 결핍'을 충원하는 수정절차, 회원국 의회의 기능 및 시민 발의를 포함해서 회원국의 참여 유보(opt-out) 또는 탈퇴에 대해 명시한다. 첫째, 유럽연합 조약체계에 대한 수정절차를 명시하여 회원국, 유럽의회 및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이사회에게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유럽이사회에게 제출한 이후 심의·결정과정을 규정한다(Hix 2008, 164-165).<sup>9)</sup> 둘째, 회원국 의회의 1/3 또는 법무와 내무정책분야에 관해서는 1/4

8) 니스조약에 의해 채택된 기존 표결방식은 첫째, 과반수 또는 2/3 회원국, 둘째, 유럽거주 유권자의 62%, 그리고 셋째, 회원국 간 협상에 의해 배정된 가중치의 74%의 찬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반면에 리스본조약은 앞서 두 충족조건을 변경했을 뿐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에 비례해 가중치를 재조정했다.

9) 크게 일반(ordinary) 절차와 간소(simplified) 절차로 분류한 조약체계의 수정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lisbon-treaty.org/wcm/the-lisbon-treaty/treaty-on-european-union-and-comments/title-6-final-provisions/135-article-48.html>(검색일: 2010/12/01)을 참조할 것. 특히 수정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고질적 병폐로 지탄의 대상이 된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이 충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히스는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

〈표 1〉 리스본조약의 권한영역

	독자영역 <sup>1</sup>	공유영역 <sup>2</sup>	보조영역 <sup>3</sup>
역할	EU의 독자적 국제협약 체결권한	EU 선점권한의 회원국 우위 명시	EU의 회원국 지원, 조정, 보완
정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연합 관세 연맹</li> <li>• 회원국 국내시장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합수칙 신설</li> <li>• 유로존 회원국의 통화 정책 수립</li> <li>• 공동어업정책의 해양생물자원 보존</li> <li>• 공동 상업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시장</li> <li>• 사회정책</li> <li>• 경제-사회-영토적 결집</li> <li>• 해양생물자원 보존 이외 농어업</li> <li>• 환경</li> <li>• 소비자 보호</li> <li>• 교통</li> <li>• 범유럽 연결망</li> <li>• 에너지</li> <li>• 자유, 안보, 사법 분야</li> <li>• 공공위생과 관련된 공동안전 사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위생 증진과 보호</li> <li>• 산업</li> <li>• 문화</li> <li>• 관광</li> <li>• 교육, 청소년, 스포츠, 직업훈련</li> <li>• 시민보호(재앙방지)</li> <li>• 행정협조</li> </ul>

출처: 독자영역 TFEU Part 1, Title 1, Article 3; 공유영역 TFEU Part 1, Title 1, Article 4; 보조영역 TFEU Part 1, Title 1, Article 5&6.

1. <http://www.lisbon-treaty.org/wcm/the-lisbon-treaty/treaty-on-the-functioning-of-the-european-union-and-comments/part-1-principles/title-i-categories-and-areas-of-union-competence/145-article-3.html>
2. <http://www.lisbon-treaty.org/wcm/the-lisbon-treaty/treaty-on-the-functioning-of-the-european-union-and-comments/part-1-principles/title-i-categories-and-areas-of-union-competence/146-article-4.html> <http://www.lisbon-treaty.org/wcm/the-lisbon-treaty/treaty-on-the-functioning-of-the-european-union-and-comments/part-1-principles/title-i-categories-and-areas-of-union-competence/147-article-5.html>
3. <http://www.lisbon-treaty.org/wcm/the-lisbon-treaty/treaty-on-the-functioning-of-the-european-union-and-comments/part-1-principles/title-i-categories-and-areas-of-union-competence/148-article-6.html> (검색일: 2010/12/01)

지만 유럽연합조약체계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헌법에 준하는 정부구조와 구성원 선출방식 및 권한영역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과제는 이러한 구비된 요건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헌신에 달려 있다. 수정절차의 명시는 이런 맥락에서 헌법의 기본 틀을 민주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실질적 내용으로 충실하게 채웠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법안에 반대하면, 집행위원회의 재검토를 필수로 정하고, 만약 1/2 이상이 공동결정의 결방식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유럽의회 과반수 또는 유럽연합이사회 55% 이상이 입법화 여부를 가결해야 한다. 더불어 법안이 보조성(subsidiarity)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의 참여 유보(opt-out)를 영국, 폴란드, 체코 등 회원국에게 허용했다. 이는 특히 입헌주의에 입각한 권력에 대한 위협이 지니는 이중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Walker 2007, 248). 즉 유럽의 다면성을 포괄하는 헌법이 제정되는 경우, 그 최종적 권한의 소재지로서 주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문제 뿐 아니라 명시된 정부체계와 권한영역이 과연 헌법이 표명하는 기본정신 또는 이념체계를 충실하게 반영 및 구현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넷째,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속령, 자치령 등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섯째, 백만 명의 유권자가 서명한 발안을 집행위원회를 통해 제안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발의를 제도화했다.

그렇다면 <표 1>에서 보듯이 통치체계의 정비를 위해 마련된 권한영역 분류가 지역통합의 현실에 얼마나 부합할까? 나아가 이러한 헌법상 권한영역 분류가 “하나의 유럽”을 통해 유럽의 다면성을 투영한 유럽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해내는데 적절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유럽헌법조약의 인준과정에서 목격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공식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을 통한 통합은 결국 정치과정에 의한 통합 현실과 괴리를 드러내기 마련일까(Christiansen and Reh 2009, 69-82)? 이러한 질문은 설령 “하나의 유럽”이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장, 하나의 화폐” 등을 통해 유럽의 다면성이 유럽의 정체성으로 형상화되더라도 그 경로가 평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제도화 경로를 거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에 기인한다(Héritier 2001, 57).<sup>10)</sup> 구체적으로 유럽의 다면성이 유럽의 정체성으로 제도화되는 경로를 첫째, 규정의 변경이 공공연한지 여부에 따라(overt or covert), 둘째, 공식적 변경방식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표 2>와 같이 “유럽 정치 공간(European political space)”의 세 형태로 분류한다(Sweet et al. 2001, 12).<sup>11)</sup>

10) 특히 화폐의 경우도 최근 글로벌 경제-재정위기로 인해 금융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었다(Hosli 2010).

11) 여기서 “정치 공간”이란 “행위자가 누구인지, 상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가능한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규정과 절차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표 2〉 유럽 정치 공간의 분류

	overt & formal	overt & informal	covert <sup>3</sup>
유 형	공식적 규정 해석 <sup>1,1</sup>	정보 교환, 책임공방, 감시 <sup>2,1</sup>	행위자의 헌신 표명
	협상을 통한 규정의 공식적 변경 <sup>1,2</sup>	네트워크 구축 & 동원 <sup>2,2</sup>	격리된 결정과정
		자동 조정 <sup>2,3</sup>	선택 여건의 재편성

출처: 에리띠에(Héritier 2001, 59-68)의 내용을 정리해서 저자가 도표로 전환함.

- 1-1. 로마조약에 근거해 유럽사법재판소와 집행위원회가 조약의 내용을 정책지침으로 전환하는데 해석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예컨대, 유럽사법재판소는 “시장 통제”와 “시장 할당”에 대한 개념적용의 준거를 제시했고, 집행위원회는 “정량적 무역 장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결정하는데 일조했다.
- 1-2. 예컨대 동-중유럽국가의 가입을 위해 지역지원기금이 배정된다면 기존 회원국의 저발전지역은 재정지원의 기반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보조성 원칙을 내세워 개별 회원국의 중앙정부 간 협상으로 지역보조기금의 재배정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2-1. 예컨대 공동노동시장정책 수립 당시 고용에 관한 유럽차원의 명시적 권능 도입을 둘러싸고 회원국이 양분되자 집행위원회는 실업정책에 관한 연성 프로그램을 통한 공조를 도모했다. 또한 유럽차원의 전화통신, 연구 및 기술정책 채택에 대해 개별 회원국의 심한 반대에 부딪힌 집행위원회는 기업 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정보 및 의견교환과 연구기금을 제외하여 각 중앙정부의 자발적 정책변화 유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제재능력이 결여된 집행위원회는 지역보조기금의 집행내역자료나 환경유해물질 배기가스량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책임공방을 통해 정책순응을 유도한다.
- 2-2. 빈곤퇴치정책의 연장에 대해 각료이사회가 거부할 조짐을 눈치 챈 집행위원회는 각국의 행정부처, 이익집단 및 대기업, 나아가 비정부기구까지 망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동원해서 정책에 반대하는 회원국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책을 지속시키는데 성공했다.
- 2-3. 비공식적 규정의 다른 형태로서 자동 조정은 장래 교류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을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각료이사회 “분산된 상호성 원칙,” 즉 갈등이 타결되더라도 특정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전적으로 무시되는 조치를 방지하려는 비공식적 갈등해소기제를 들 수 있다.
3. 소위 “kitchen politics”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제도화로서 잠재적 갈등상황이나 도출된 합의내용의 함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행위자를 결정과정에 투입하거나, 결정과정으로부터 잠재적 반대론자를 격리시키거나 혹은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의 선택 상황을 폭넓은 지지를 받는 다른 안건과 연계시키거나 다른 분류표시에 의해 명명하여 합의가 수월한 다른 의결방식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등 교착상태로부터 돌파구를 찾아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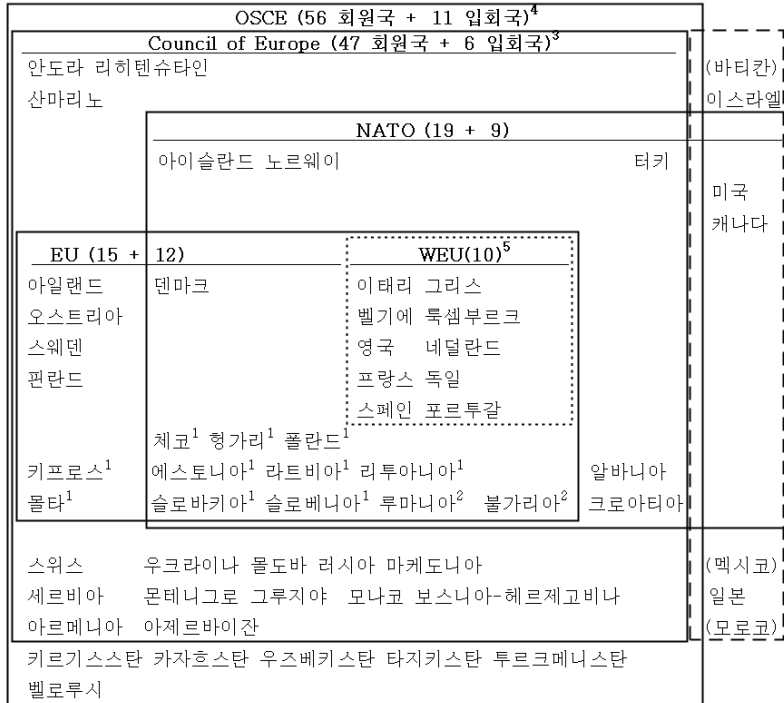


유럽의 다면성은 유럽의 지역통합과정에서 각 국가의 독자적 특유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합의, 심지어 경우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의결절차를 요구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의결기제로서 각료이사회, 즉 현재 유럽연합이사회와 같은 정부간(intergovernmental) 기구가 유럽의회와 같은 초국가(supranational) 기구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지역통합이 이러한 복합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해 진행되다보니 지지부진한 듯 보이다가 급격한 진전을 보이는 기묘한 발전양상을 띠는 사실이다. 결국 유럽의 다면성을 유럽의 정체성에 담아내는 비결이 과연 있는지, 만약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에리띠에(Héritier 2001)는 유럽연합의 주요 의결기구로 제한해 이해관계의 충돌 소지가 있는 각종 안건을 공식적 의결절차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소위 “창업주 정신을 발휘하는 행위자”의 묘안을 제시한다. 이를 공식 기구에 국한하지 않고 이슈 중심의 협의체로 확대하면, 한편으로 에리띠에의 논지를 입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버마스의 우려가 재현된다(Habermas 2008, 78-105).<sup>12)</sup>

〈그림 1-1〉은 유럽 지역통합을 안보 측면에서 회원국을 분류한 도형인 반면에 〈그림 1-2〉는 유럽 지역통합을 경제 측면에서 회원국을 분류한 도형이다. 안보 측면에서 본 “하나의 유럽”은 냉전 도래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이질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핵심 역내 및 역외안보기구로서 제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현되었다. 대체로 중립국은 유럽중심기구인 EU에는 공식적으로 가입했지만 비유럽중심기구인 NATO에는 공식적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비유럽중심기구인 NATO에는 공식적으로 가입했으나 유럽중심기구인 EU에는 공식적으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된 모습으로 나타난다.<sup>13)</sup> 반면에 경제 측면에서 본 “하나의 유럽”은 국경통제를 제거하는 쉥겐 지역(Schengen Area)이나 화폐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로존(Euro Zone) 모두 선택사양인 참여유보(opt-out)를 통한 연성절차를 통해 아일랜드, 키프로스, 또는 영국(1999년부터 2004년 복귀까지)이 가입하지 않은 형태로 분할되었으며 그 분할폭도 안보 측면보다 훨씬 적다. 더욱이 쉥겐 지역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유럽연합조약체제로 편입되면서 그 일부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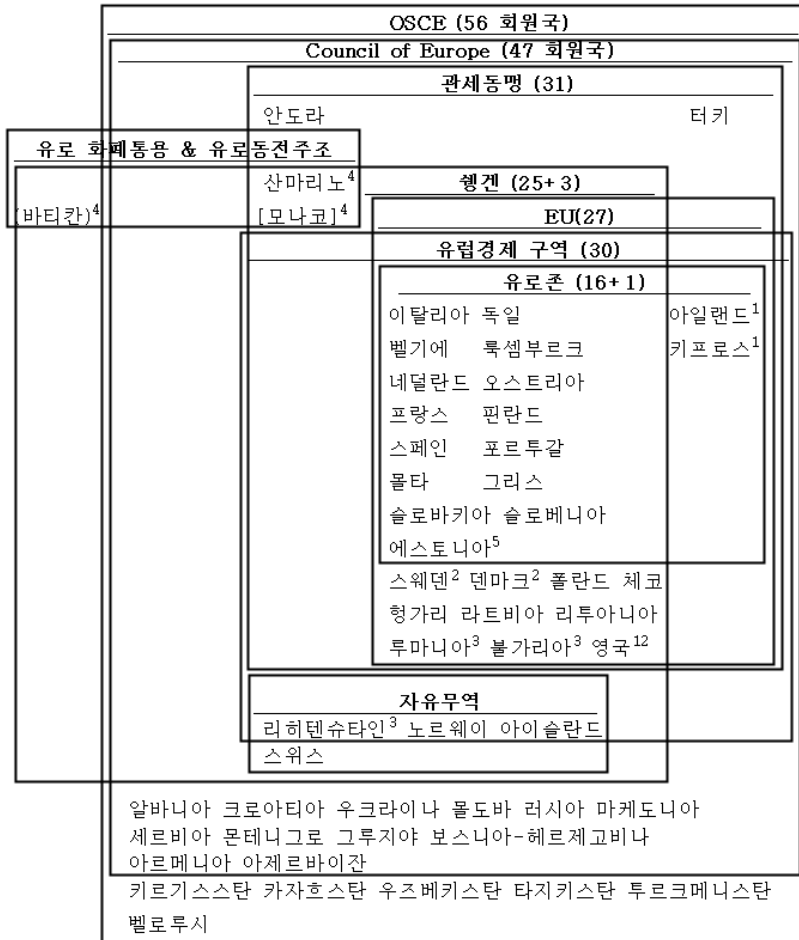
12) 하버마스는 지역통합의 내실을 제고하려는 지도자와 일반인 간 심리(mentality)나 참여(participation)에 있어서 간극을 특히 우려하며 리스본조약마저 이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조지(George 2008)는 리스본조약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일반 시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유럽회의주의를 단적으로 대변해준다.

13) 예외적으로 덴마크는 나토(NATO) 창설 회원국이면서도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에 명기된 참여 유보(opt-out)를 채택해 EU의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에 참여하지 않았다.



- 2004년 (+8), 2009년 EU (+2) EU 신입회원국으로 구 동구권 국가가 가입했다. 2004년에는 몰타와 북부 키프로스도 신입회원국으로 승인되었고, 체코, 헝가리, 폴란드는 1999년 NATO에 앞서 가입했다.
- 2004년 (+7), 2009년 (+2) NATO 신입회원국으로 구 동구권 국가가 가입했다. Partnership for Peace을 조인한 22개 비회원국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러시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그루지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동구권 및 CIS국가)와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몰타(중립국가) 그리고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지중해연안 국가) 등이다.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입회국은 캐나다, 멕시코(의회 & 각료이사회), 미국, 일본, 바티칸(각료이사회), 이스라엘, 모로코(의회) 등으로 점선 안에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의 입회국은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등 지중해연안 국가와 한국, 일본, 태국, 아프가니스탄, 몽고 등 아시아 국가가 있고 <그림 1-1>에서는 생략했다.
- 서유럽연합(WEU)은 브뤼셀조약(1948)의 냉전에 대응하는 서유럽국가의 안보협정에 근거해 10개 회원국이 창립했다. 이후 EU와 NATO 가입여부에 따라 입회국으로 아일랜드, 덴마크(1992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1995년)가 참여했고, 준회원국으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터키(1992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1999년)가 참여했고, 그리고 준동반국가로 분류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1994년), 슬로베니아(1996년)가 참여했다. 냉전의 종식으로 주요 기능이 유럽연합으로 이관되었고, 리스본조약 인준으로 상호방위 조항이 소멸됨에 따라 2011년 WEU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그림 1-1> 유럽 지역통합: 안보



1. 쉡겐 지역 참여 유보(opt-out): 영국(1999/2004 복귀), 아일랜드(2002), 단 키프로스(2004)는 분쟁으로 인해 2010년 현재에도 발효되지 못한 상태임.
2. 유로존 참여 유보(opt-out): 영국, 덴마크, 스웨덴(1999)
3. 리히텐슈타인(2010) 및 루마니아, 불가리아(2011)는 쉡겐 발효 예정임.
4. 바티칸, 산마리노(1997)는 실질적 쉡겐 지역이고, 모나코는 프랑스를 통해 쉡겐 지역에 가입함.
5. 에스토니아(2011)의 유로존 가입이 승인됨.

〈그림 1-2〉 유럽 지역통합: 경제

의 신규가입국은 자동적으로 가입대상이 된다. 더구나 2010년 현재까지 비유럽연합회원국인 스위스도 쉥겐 지역에는 참여한다. 다만 엄격한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승인되는 유로존의 경우에는 연성절차인 참여유보에 의거해 영국, 덴마크, 스웨덴이 가입하지 않았지만, 에스토니아와 같이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공식 또는 잠재 후보회원국이 가입을 기다리는 형태로 나뉜다. 특이한 점은 경제 측면에서는 “하나의 유럽”이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책”과 “하나의 시장, 하나의 화폐”로 나뉘어 혼재하며 과도기적 전환을 거치며 연착륙(soft landing)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분할 형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역사적 사실의 배경에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가입의지와 가입이 승인된 시기 간 격차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다. 지역통합 가입 현황을 가입(또는 경우에 따라 탈퇴) 시기 중심으로 2010년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회원국(후보국 포함) 간에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분할된 형태의 시간 경과가 특정시점에 집결된 점을 미루어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지역통합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유럽경제공동체를 주도한 창립국가 6개국에 반발해 영국과 더불어 중립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포르투갈이 스톡홀름 회의(1960)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창설했고 핀란드(1986)가 추가 가입했으나,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유럽경제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탈퇴함으로써 핵심기능은 이미 유럽연합으로 이관되었다. 셋째, “하나의 시장”에 초석을 제공하는 관세동맹을 로마조약(1957)에 의해 창립국가 6개국이 1968년에 출범시키면서 유럽경제공동체(EEC) 또는 유럽공동체(EC)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가입되나, 스위스는 제외된다. 반면에 경제 측면에서 실질적 참여를 채택하는 소국가로 안도라, 산마리노 및 프랑스를 통해 모나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쉥겐 지역에 포함되고 또한 유로존이 아니면서도 유로를 통용한다. 넷째, 터키는 1995년부터 관세동맹에 참여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공식기구도 아니지만 상징적 기구인 유럽평의회 창립 회원국이다. 또한 비유럽중심이나 핵심안보기구인 NATO에도 터키는 1952년 이후 회원국이지만, 1987년부터 추진한 유럽연합의 가입신청은 유럽연합조약체계가 천명하는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근거에서 2010년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다. 다섯째, 잠재 후보가입 대상국인 알바니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는 회교도가 과반수 이상이고, 터키에는 비록 공식적 지정종교가 없으나 인구의 99퍼센트 이상이 회교도이다. 주시할 점은 “하나의 유럽”을 대변하는 유럽 다면성 조립의 정치가 유럽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종교적 다양성의 포용 한계가 역내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반발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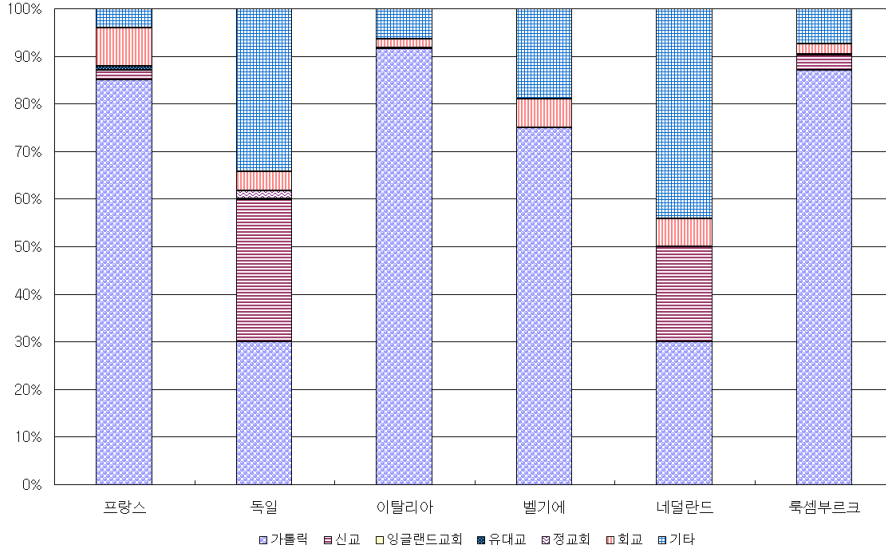
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Triandafyllidou 2010; Karolewski 2009).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종교가 새롭게 정치 시장에 등장한 “탈세속화된” 유럽사회에서 유럽의 다면성과 정체성이 어떻게 상호 작동하는지에 주력하여 그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유럽의 다면성과 정체성

유럽의 정체성은 사회, 정치, 경제 및 문화 영역에서 다면성(multiplicity)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특히 문화적으로 내재된(culturally embedded) 다면성은 언어, 종교 등에서 드러나는 차이점 그 자체보다 특정 집단이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신념과 실행으로부터 파생되는 차이점에 기반을 두는 정체성에 대한 접근법을 요구한다. 결국 문화적으로 내재된 다면성을 접근하는 방식은 집단 간 이질성의 제도화, 즉 인지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에 의해 정체성을 규정한다(Checkel and Katzenstein 2009, 11-15). 우선 유럽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언어적 다양성(diversity)이 두드러진다. 2010년 현재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는 23개에 달하지만 영어가 공통어(lingua franca)로 통용되면서 언어적 다양성은 유럽의 다면성을 상징하나 유럽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왜냐하면 유럽의 정체성이란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정체성 이라기보다 민족국가의 정체성이 유럽 차원에서 재구성된 정체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반면 종교적 다양성(diversity)은 유럽의 다면성과 정체성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유럽화(Europeanization) 작업을 저해할 잠재력을 지닌다.<sup>15)</sup> 그러나 <그림 2-1>에서 보이는 종교적 다양성이 결과적으로 1952년 당시 창립국가 6개국의 정치적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는 사실은 유럽의 다면성과 정체성 간 연결고리가 또 다른 기제를 통해 작동한다는 여지를

14) 일부 학자는 유럽의 정식 공통어가 부재하다는 사실만으로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유럽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나아가 정체성의 정치를 구현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가치를 부인하기도 한다.

15) 다양성(diversity)이 동일하지 않은 구성 요소의 차이가 드러나는 정도를 가리킨다면, 다원주의(pluralism)는 진일보해 이질적 요소 간 중첩을 관용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본문에서 인용하는 다면성(multiplicity)에는 다양성이나 복수성(plurality) 자체보다 정체성이 다면적(multilateral) 관계에 근거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럽의 종교적 다양성이 유럽차원의 정당 집단 정치의 균열구조와 조우할 때, 유럽의 정체성이 유럽의 다면성을 왜곡하면서 투영하는 유럽화의 현 정치주소를 묘사하는데 다양성이나 다원성보다 적절한 용어라고 저자는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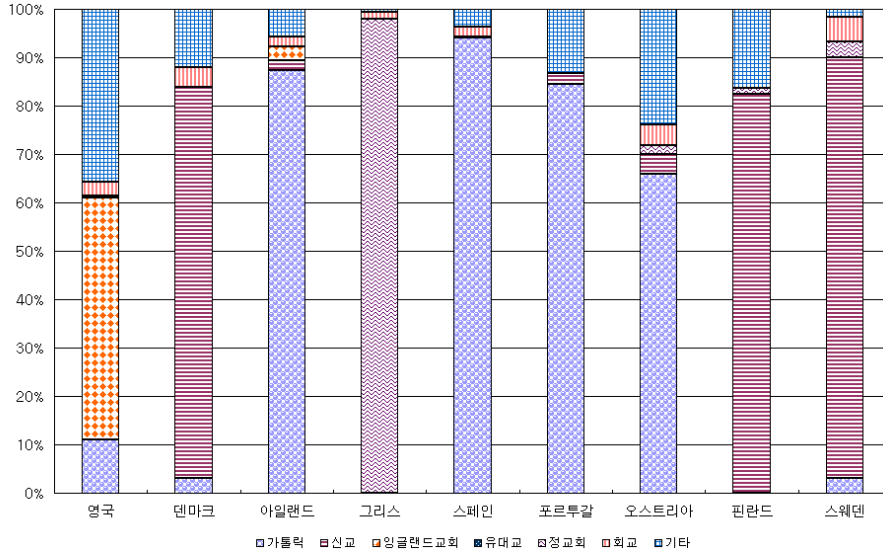
〈그림 2-1〉 창립국가 6개국의 종교적 다양성

남긴다.<sup>16)</sup>

창립국가 6개국이 유럽의 다면성과 유럽의 정체성을 연계하는 데 연착한 지 20년 후에 영국, 아일랜드 및 덴마크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1차 확대가 성사되었고, 이로부터 7년 후에 2차 확대를 통해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가 가입했고, 또 다시 15년 후에 3차 확대에서 스웨덴, 핀란드 및 오스트리아가 가입함으로써 비로소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도약했다.<sup>17)</sup> 즉, 유럽의 다면성을 유럽의 정체성과 연계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유럽연합으로 결실을 맺기까지 40여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창립국가 6개국이 주창한 공동시장(common market)에 대항하는 영국 주도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가 EFTA로 정착되면서 유럽은 통합된 형태의 경제동맹과 정부 간 협의체에 준하는 관세동맹, 즉 공동체와 협의체로 양분되는 양

16) 석탄과 철강을 독일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슈망 플랜이 1953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구체화되면서 프랑스, 독일 이외 베네룩스 3국과 이탈리아 등 총 6개국이 창설에 동참했다.

17) 1차 확대를 가능하게 한 파리조약(1972년)까지 20년 기간 동안 프랑스 의회비준 실패로 유럽방위공동체(EDC) 결성은 좌절되었으나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더불어 유럽공동체(EC)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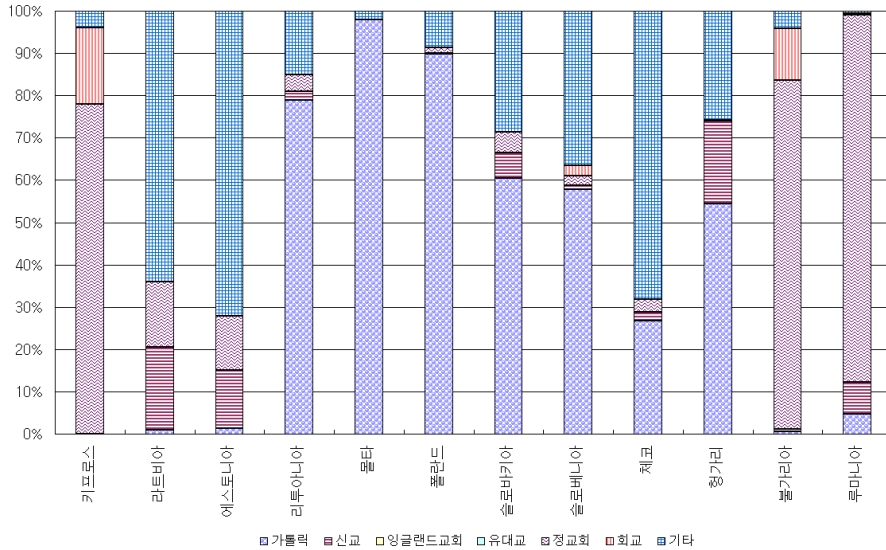


〈그림 2-2〉 1~3차 확대 가입국가 9개국의 종교적 다양성

상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공동체와 대립각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가입을 신청한 영국의 이중적 행보이다. 결국 영국의 가입신청은 프랑스의 거부로 좌절되었으나, 영국마저도 공동체를 부인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 유효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Ludlow 2010, 110).<sup>18)</sup> 결국 1995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이르러서야 유럽통합에 안착한 9개국의 종교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림 2-2〉는 한편으로 종교적 다양성이 유럽의 다면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유럽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 기제로서 각 회원국의 국내정치를 유럽에 투영하는 유럽화를 통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체제가 정립되면서 “하나의 유럽”은 가속도를 내며 질주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종교적 다양성은 단지 유럽 다면성의 상징일 뿐 유럽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려는 의지만 결집된다면 종교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럽”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유럽통합의 확대가 일단락되면서 2004년에 가입한 중부 동유럽권 10개국과 2007년에 가입한 2개국 등 총 12개국 신입 회원국의 종교적 다양성은 15개국 기존회원국

18) 특히 대다수의 유럽/유럽연합 발전사 초기 연구가 초국가기구에 대한 찬반 여부에 주력해 국가 단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 또는 프랑스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져 있다.



출처: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index.html>(검색일 2010/ 12/01)

〈그림 2-3〉 신입회원국 12개국의 종교적 다양성

과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가. 창립국가 6개국 중 독일과 네덜란드는 가톨릭과 신교를 합쳐 전체 과반수를 초과하는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및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가톨릭이 2/3 이상을 차지한다. 1~3차 확대 회원국을 살펴보면, 영국과 그리스는 각기 잉글랜드교회와 그리스정교가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예외적 경우이고,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에서는 가톨릭이 지배적인 반면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신교가 지배적이다. 〈그림 2-3〉은 기존회원국과 비교해 그리스처럼 그리스정교, 불가리아정교, 루마니아정교가 우세한 키프로스,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경우가 있는가하면, 프랑스 등과 같이 가톨릭이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리투아니아의 경우도 있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또는 체코와 같이 종교적 다양성이 복잡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가톨릭, 신교, 유대교, 잉글랜드교회 및 각종 정교회에 근간이 되는 기독교와 이질적 종교인 회교가 창립국가 6개국이나 1~3차 확대 회원국에서는 1/10 이내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키프로스와 불가리아와 같이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가입후보국 3개국 중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크로아티아와 터키, 그리고 잠재적 후보국 중 세르비아를 제외한 알바니아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또는



몬테니그로 등도 회교인구가 10퍼센트를 초과한다.

이와 같이 회교인구가 소위 중대 규모(critical mass)를 구성하는 회원국 또는 후보국이 늘어나면서, 종교적 다양성 자체가 유럽의 다면성을 상징하는 단계를 벗어나 유럽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정치적 통합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즉, 유럽통합이 외면상으로는 확대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심화를 통해 “하나의 유럽”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다면성과 강요된 형태로서 유럽의 정체성 간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제로섬(zero-sum) 성향이 증대했다. 이러한 압박은 바로 유럽연합의 기본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험성을 지니며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모순을 지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중영합주의(populism)가 경제 불황 또는 안보 불안, 보다 정확하게는 그러한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유럽의 다면성으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유럽의 문화적 유산을 유럽의 정체성 확립으로 잇는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된다는 데 있다.

유럽의 다면성은 다문화주의, 즉 “각기 고유한 역사와 삶의 방식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수하려는 공동체의 복수성에서 파생된 다양성이 주요 근간이 된 문화적 다양성의 유형에 중점을 두는” 공동 사회적(communal) 다양성과 부분적으로 공통점을 공유한다.<sup>19)</sup> 또한 다문화주의가 궁극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집단행동으로 제도화시키듯이, 예컨대 이념에 근거한 사회운동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익대변을 목표로 하는 정치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다면성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유럽의 정체성은 유럽의 다면성을 공동체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유럽의 종교적 다양성을 유럽의 정체성과 연계하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까? 이 연계작업의 최종결과물이 유럽을 구성하는 공동체의식 또는 연대의식(solidarity)이라고 상정한다면, “하나의 유럽”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유럽문화’ 또는 ‘하나의 유럽 정체성’을 의미할까?<sup>20)</sup> 아니면 “하나의 유럽”은 복합사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9) 파렉(Parekh 2010)이 규정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현대 사회의 문화에 내재된(culturally embedded) 다양성, 또는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소문화적(subcultural) 다양성, 관점 의존적(perspectival) 다양성, 그리고 공동 사회적(communal) 다양성이 여러 형태로 결합되어 특정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가리킨다. 상세한 논의는 이옥연이 인용하는 파렉을 참조하기 바란다(2009, 336).

20) 이 경우 유럽이 복합사회라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럽”에는 이상적으로 하나의 정체성만 존재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다. 그 결과 주류를 형성하는 다수 또는 지배집단의 정체성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소수를 포함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정

복수의 정체성을 전제할까?<sup>21)</sup> 보다 근본적으로 “탈세속화된 사회(post-secular society)”로서 2010년의 유럽은 종교적 다양성을 어떻게 정치풍경에서 담아내는가(Dalferth 2010, 317-345)?<sup>22)</sup>

주지하듯이 대다수 학자는 사회적 근대화와 세속화는 정비례한다는 기존 학설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경제-사회적 발전과 세속화 간 높은 상관관계가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는 여전히 피상적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Habermas 2008, 60). 그러나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목격되는 종교의 재부상이 “탈세속화된 사회”로서 유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근대화와 세속화로 종교가 권위체로서의 역할, 즉 사회적 기능성을 상실하였지만, 이러한 기능적 상실이 반드시 사회적 영향력과 연계성 자체를 모두 상실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의 재부상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목격되는 근본주의자의 극단적 행동이나 언행을 전하는 해외단신을 빈번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위협인지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국내 공공영역(public sphere), 즉 미디어, 이익단체, 정당 및 싱크탱크(think tank)에 더해 종교기관이나 연계조직도 종교 또는 종교성을 점차 정치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민 유입의 증가로 종교성의 다원주의(pluralism of religious confessions)와 생활방식의 다원주의(pluralism of ways of life) 간 불편한 관계가 노출되면서 이민자 문화와 주류사회 문화 간 관계설정 및 국가차원의 통합 문제가 국내 뿐 아니라 유럽 차원에서 정치쟁점화하기 때문이다(Habermas 2008, 61-65).

그렇다면 종교가 근간이 되는 공동체의식은 유럽에서 사회계층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다음 <표 3>은 스키르뇌(Stjernø 2004)에서 발췌한 구교와 신교, 특히 루터교파에서 발전

---

립하려는 정치적 압력의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러한 우열순위는 그 서열관계에 근거해 “하나의 유럽”으로의 동화를 내세우며 반발세력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불평등관계를 영구화시킬 위험도 지닌다.

- 21) 반면에 유럽이 복합사회이기 때문에 복수의 사회에는 자동적으로 복수의 정체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집단이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수의 정체성을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우열순위에 근거한 서열관계를 배격하고 나아가 주류 정체성으로의 동화를 요구하는 단일 정체성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배격한다. 단 서열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상호 이질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
- 22) 달퍼쓰는 탈세속화된 사회를 종교의 재부상이라는 측면보다 종교에 종속되거나 특권을 부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종교를 내세우길 꺼리지도 않는다는 특성에 초점을 맞춰 정의한다.

〈표 3〉 구교와 신교의 공동체의식 개념 비교

	토대	목적	포괄성	공동연대 성향
구교	-신 앞의 인간 평등 -가족 -인간 상호의존성	-사회 평화 & 조화 -사회 통합 -인간 삶의 상황 증강	-매우 강함 -모든 계층 포함 -특히 빈곤층 & 취약층 -제3세계	-약함 -개인위주 -보충성 원칙
신교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됨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노예됨	-신의 왕국을 지상에 구현함 -만민에 대한 복지	-핍박받는 사람 -빈곤층 & 취약층 -제3세계	-약함 -성경과 의지에 의해 변경됨

출처: 스키테르뇌(Stjernø 2004, 73, 83).

한 공동체의식 개념을 토대(foundation), 목적(objectives), 포괄성(inclusiveness), 공동연대 성향(collective orientation)에 근거해 비교한다. 유의할 점은 비록 종교가 중세부터 유럽에서 사회통제의 주요기제로 작동했지만, 공동체의식을 정치과정에 접목해서 개념화시킨 시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는 사실이다(Mechi 2010, 154; Stjernø 2004, 83). 즉, 세속화된 유럽사회의 근저에도 종교적 정체성에 기원을 두는 정치적 정체성이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국적을 초월하는(transnational) 성격이 강하고 다문화지향적인 구교에 비해 신교는 국가를 근간으로 조직되는 경향이 큰 탓에 세계화 추세에 적응력이 미흡했다. 따라서 신교파 중 극단적 성향이 강한 분파가 주도하여 공동체의식 개념을 발전시킨 결과 신교 내 주류 교리로 정착하지 못했다. 결국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 간 갈등의 골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정체성에 밀접하게 연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국가의 정체성이 성립되던 근대에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급격하게 세속화에 밀려 사회적 영향력의 기반을 잠식당했다(Rasmussen 2010, 128).<sup>23)</sup>

그러나 최근에는 기독교 교리와 이에 근거한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의 공동체의식이 지역통합의 확대와 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탈세속화된” 유럽사회의 정치과정을 통해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조직되는 토양을 제공하는 양상이다. 다음 절에서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탈냉전을 거치면서 사회적 영향력의 기반으로부터 단절된 종교적 다양성이 지역통합과정에서 어떻게 “탈세속화된”

23) 대조적으로 유럽통합사가 1945년 이후 경제통합사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유럽의 다면성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유럽 정체성을 논의하는 공공영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재탄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유럽 다면성 조립의 정치’ 현주소를 검토한 후 결론을 대신하여 현재진행형인 유럽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둘러싼 ‘유럽 다면성 조립의 정치’에 대한 체계적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IV. 종교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유럽의 정체성

리스(Risse 2010, 226)는 유럽의 정체성과 정치 현주소를 제공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 간 관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정치 체제는 필연적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성의 명분으로 공동체의식 또는 정체성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세속화된 사회로 명명되던 유럽이 새롭게 “탈세속화된” 사회로 거론되면서 유럽에서 종교가 유럽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유럽의 공적영역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다(Castiglione 2010, 46). 이러한 추세는 헌법조약 인준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유럽문제의 정치화가 정치적 성향에 기반을 두는 동시에 유럽차원의 공공영역에 새로운 분층(cleavage) 축으로서 종교적 정체성으로부터 추출한 문화적 정체성의 축을 더해 정당 또는 정당 집단의 지지기반을 재편성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sup>24)</sup> <표 4>는 앞서 <표 3>에서 비교한 신구교파에 토대를 두는 공동체의식 개념과 달리, 세속화된 사회경제적 분층의 축에 의해 정치적 입지를 표명하는 사회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의 공동체의식 개념을 대조한다.

문제는 유럽이 “탈세속화된” 사회로 전환하면서 유럽의 정체성과 관련된 “하나의 유럽”을 구성하는 정치풍경에서 사회경제적 분층의 축에 의한 정치적 입지 표명으로부터 일탈

24) 리스(Risse 2010, 239)의 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계급 분층/ 문화 분층	좌	우
통합	녹색정당/대안정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보수당
구획	좌익 대중연합 정당	우익 대중연합 정당

리스는 유럽의 비전이 기존의 좌우에 의한 사회경제적 분층보다 세계주의 대 국수주의로 대치하는 문화적 분층으로 축이 형성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표 4〉 사회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의 공동체의식 개념 비교

	토대	목적	포괄성	공동연대 성향
사회민주당	-상호의존성 -차이점 수용 -감정이입 -동정심 -도덕과 윤리	-공동체감 창출 -사회 통합 -위험부담 공유 -자기이익	-매우 광대함 -국가 전체 -계3세계 -여성 -소수집단	-중간 정도 -개인 자유 인정 -개인자유와 집단공유 간 모순 인지
기독교민주당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됨 -기독교 교리에 근거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윤리 -인간의 존엄성 -상호의존성 -신의 일에 참여하거나 기여하는 개인의 의무	-사회통합 -사회조화 -정의	-광대함 -계층 교차적	-약함 -인간 및 보충성 개념과 공동체의식의 집단 지향적 측면 간 균형을 모색함

출처: 스키테르네(Stjernø 2004, 200, 242).

하여 종교에 근거한,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교를 정치도구화해서 새로운 연대의식으로 일체감을 구성하는 문화적 분층의 축에 의한 정치적 입지 표명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다(홍태영 2010, 241). 특히, 유럽의회(EP)의 정당 집단(political groups) 규정에 의해 형성된 정당 집단에 자발적으로 연대를 공표한 각 회원국의 정당을 지역통합의 찬반 여부와 강도에 따라 분류해보면, 경우에 따라 국내 의회선거에서는 의석확보에 실패했으나 최근 유럽의회선거에서는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있다. 이는 단일의제(single-issue) 정당인 경우도 있으나, 유럽의 정체성을 둘러싼 반발에 의한 통합 확대를 반대하거나 그를 두려워하는 소수정당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Kaelble 2010, 205).<sup>25)</sup> 무엇보다 리스의 분류와 비교해서 기존의 좌우 분류로는 통합의 확대에 대한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뿐

25) 물론 국내 선거제도나 정당등록 및 선거자금 규제 등과 관련한 법제도적 통제로 인해 원내진출이 좌절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선거가 통일된 선거방식인 비례대표제(정당명부 또는 STV)에 근거하나, 각 회원국의 여건에 맞추어 각기 채택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의회선거와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간극은 법제도적 장애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별도의 기제, 즉 유럽의 다면성을 조립하는 정치가 탈세속화된 유럽의 정체성과 맞물려 국내보다 더 큰 폭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expert/displayFtu.do?id=74&ftuId=FTU\\_1.3.4.html](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expert/displayFtu.do?id=74&ftuId=FTU_1.3.4.html)(검색일: 2010/12/01)을 참조할 것.

〈표 5〉 유럽연합의회 무소속(Non-Inscrit)에 연계된 회원국 내 정당과 EMP 수

네덜란드	PVV (4)
벨기에	Vlaams Belang (2)
프랑스	FN (3)
스페인	UPyD (1)
영국	BNP (2), DUP (1)
오스트리아	FPÖ(2), Martin (3)
헝가리	Jobbik (3)
불가리아	AKATA (2)
루마니아	PRM (3)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RULES-EP&reference=20101110&secondRef=RULE-033&format=XML&language=EN>; <http://www.europarl.europa.eu/members/expert/groupAndCountry/search.do?group=2978&language=EN>(검색일: 2010/12/01).

아니라, 각 회원국의 유럽의 정체성을 입체화시킨다면 사회경제적 분층 축과 문화적 분층 축이 중첩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Christiansen 2009, 30).<sup>26)</sup> 더구나 〈표 5〉에서 보이는 유럽연합의회 내 정당 집단에 소속되길 거부하는 무소속 유럽연합의원은 국내에서도 무소속인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대중 영합적 성향이 강한 극단적 정치공세를 공공영역에서 전파하였으며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풍경을 뒤흔들어놓는 후유증을 낳았다(Medano 2009,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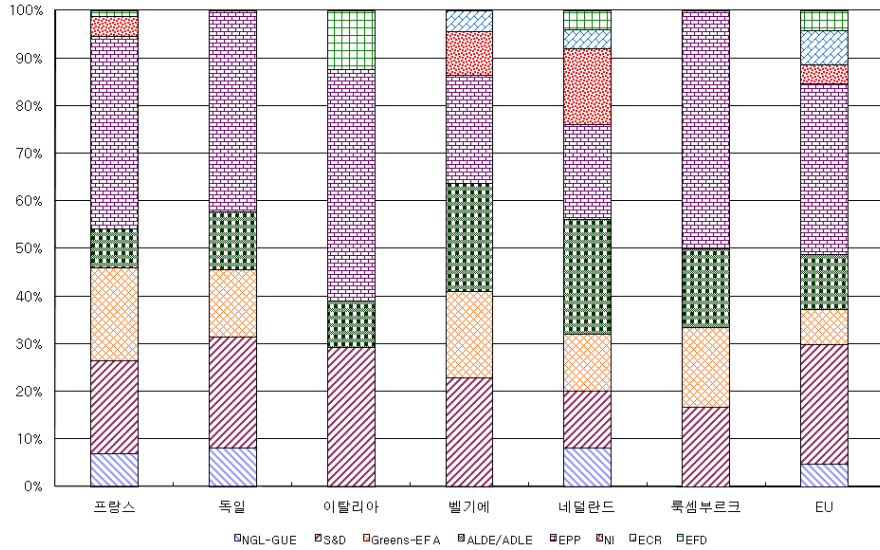
2005년 헌법조약의 인준을 거부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하나의 유럽”에 대한 저항이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였을까, 아니면 감정—정서적 근거 때문이었을까(Zowislo-Grünwald 2009, 15)? 더구나 불발에 그친 제도개혁은 특히 의사결정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공식적 규정변경을 통해 통합의 제도화를 모색하기보다 연성 프로그램이나 비공식적 규정변경, 심지어 비공식적 제도화를 획책하는 ‘kitchen politics’에 의해 돌파구를 찾거나 또는 비선출 전문직인 재판관의 판결에 준하는 규정 해석권한을 지닌 관료의 전횡이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결핍”이 악화되어 투명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의 정착에 해악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의 회원국 비중치를 인구비례에 의해 재조정하려는 제도개혁을 주장하기도 한다(Tsebelis 2009, 66). 그렇다면 지난 15년

26) 크리스찬센은 지나치게 앞서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신(新)유럽(new Europe)”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니스 정상회의를 가리켜 “니스의 악몽”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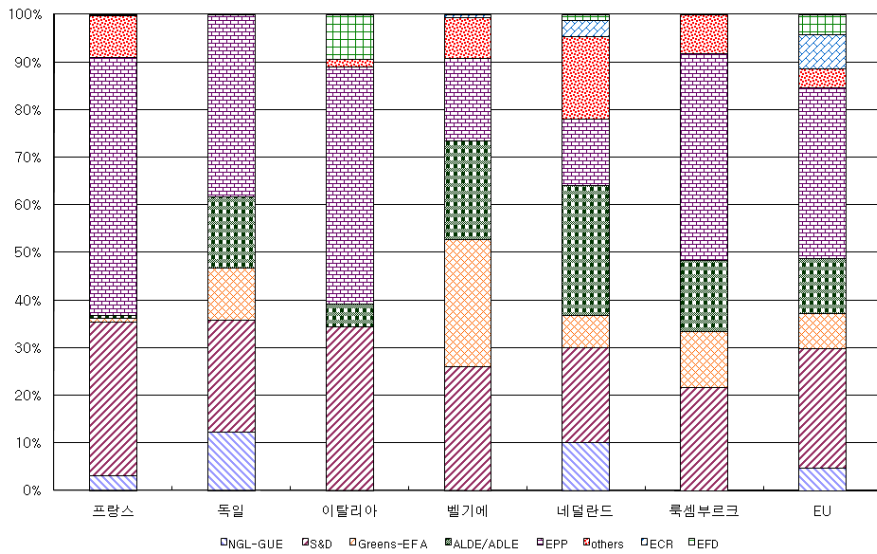
간 지역통합의 심화(deepening)와 확대(widening)를 거치면서 2010년 현재 유럽 다면성 조립의 정치 현주소는 어떠한 모습으로 유럽의 정체성을 그려낼까? <그림 3>, <그림 4>, <그림 5>를 대조하면서 유럽문제의 정치화가 어떻게 “하나의 유럽”에 대한 유럽의 구상으로 드러나는지 또는 그를 저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는 창립국가 6개국, 확대국가 9개국, 그리고 신입국가 12개국으로 나눈 후, 각 국가군별로 상단에는 2010년 현재 유럽의회 정당 집단별 의석점유율, 하단에는 2010년 현재 유럽의회 정당 집단별 국내소속정당의 국회의회 또는 하원 내 의석점유율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의 각 국가별 막대 도형에서는 하단부터 상단까지 앞서 <표 5>에 분류된 좌우성향과 강도에 따라 극좌부터 극우의 순서대로 정당 집단별 소속정당의 의석점유율이 표기된다. 유럽의회 정당집단의 경우 무소속(NI)으로 연대한 각 국내정당이 나 무소속의 경우 일부는 국회의회 또는 하원 내 의석점유에는 실패한 경우도 더러 있다. 더불어 국회의회 또는 하원 내 기타 군소정당을 포함해 기타(others)로 표기했다. 그렇다면 유럽문제의 정치화가 각 국가군별로 국내와 유럽의회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그러한 양상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과 어떤 연계성을 지닐까?

우선 창립국가 6개국을 살펴보면, 중도파(프랑스 제외)와 우파는 국내보다 유럽의회에서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의석점유율을 확보한 반면에 좌파는 유럽의회에서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의석점유율을 확보했다. 특히 극좌의 경우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국내보다 다소 낮은 유럽의회의 의석점유율을 보여주며, 극우의 경우 독일에서는 국내나 유럽의회 모두 미미하나 네덜란드에서는 국내보다 오히려 유럽의회에서 높은 의석점유율은 보여준다. 프랑스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극좌와 극우가 모두 의미 있는 군소정당으로 자리 매김했지만, 프랑스에서는 국내보다 유럽의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극좌와 유럽의회에서는 국내보다 다소 낮은 의석점유율을 확보한 극우로 나타난다.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경우 극좌는 국내나 유럽의회에서 모두 미미하지만 극우는 국내보다 유럽의회에서 우세한 반면에, 룩셈부르크에서는 극좌, 극우 모두 미미하다. 특이한 점은 녹색당은 벨기에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에서 국내보다 높은 의석점유율을 보여주며 프랑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미미한 녹색당이 유럽의회에서는 좌파에 준하는 의석점유율을 확보했다. 그리고 유럽의회 평균에 비해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녹색당이 우세하다. 더욱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 공통적으로 유럽의회의 무소속에 연대한 정당 또는 의원이 유럽의회 평균보다 높으며, 바로 이 무소속과 연대한 정당 또는 의원이 강성 극우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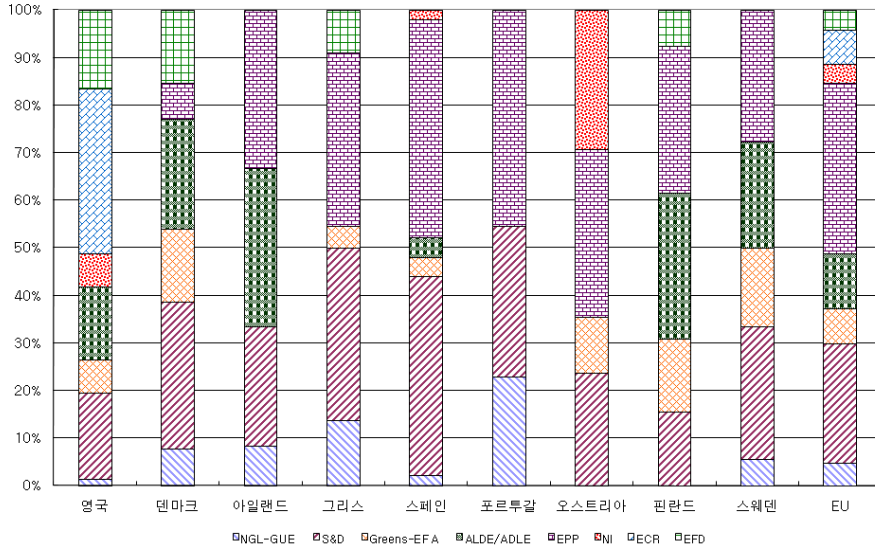


〈그림 3-1〉 유럽의회 정당 집단별 의석점유율, 창립국가 6개국(2010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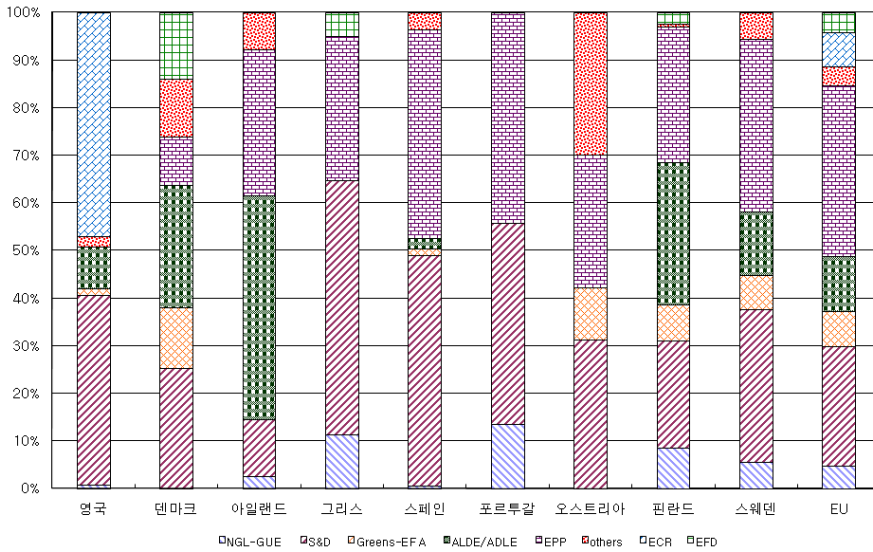


〈그림 3-2〉 유럽의회 정당 집단별 국내소속정당의 의석점유율, 창립국가 6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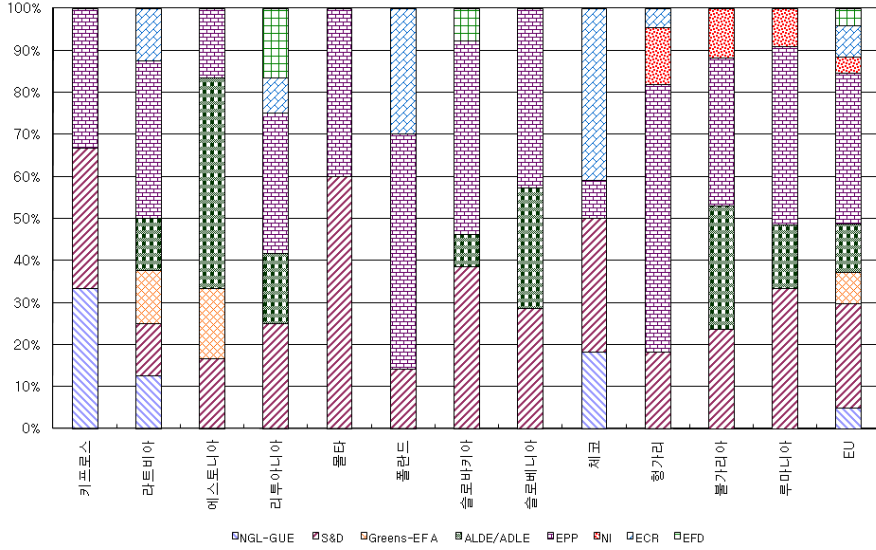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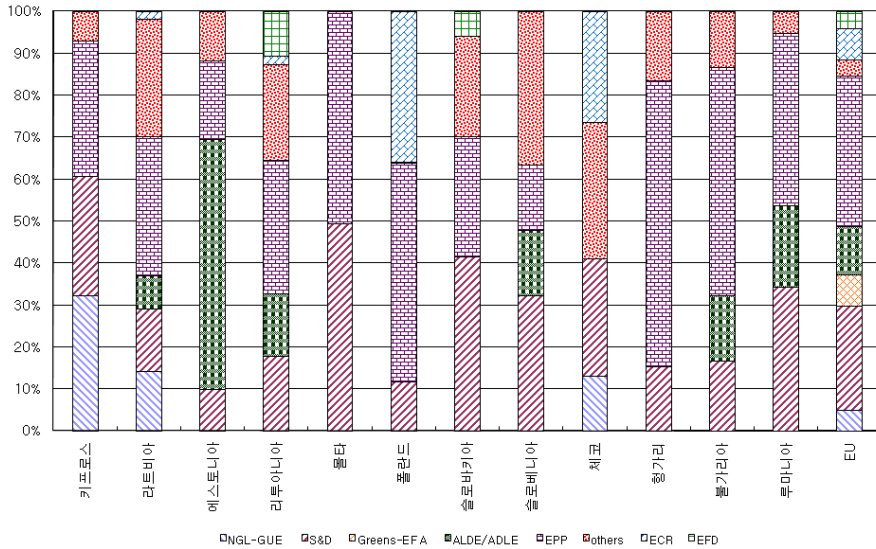
〈그림 4-1〉 유럽의회 정당 집단별 의석점유율, 확대국가 9개국(2010년 현재)



〈그림 4-2〉 유럽의회 정당 집단별 국내소속정당의 의석점유율, 확대국가 9개국



〈그림 5-1〉 유럽의회 정당 집단별 의석점유율, 신임국가 12개국(2010년 현재)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members/expert/groupAndCountry.do?language=EN>(검색일: 2010/12/01); <http://www.ipu.org/parline-e/parlinesearch.asp> 각 국가 하원 최근선거일(검색일: 2010/12/01)

〈그림 5-2〉 유럽의회 정당 집단별 국내소속정당의 의석점유율, 신임국가 12개국

다음으로 1차부터 3차 확대 시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를 살펴보면, 중도파의 경우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유럽의회 평균보다 국내와 유럽의회 모두 높지만 국내에 유사하거나 아니면 국내보다 다소 위축되어 유럽의회에서 나타난다. 영국의 중도파는 국내에서는 유럽의회 평균에 못 미치지만 유럽의회에서는 평균보다 웃도는 의석점유율을 확보했다. 이에 반해 그리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에서는 중도파가 극소수이고 스페인에서는 국내에서 미미하지만 유럽의회에서는 다소 의석점유율이 높아졌다. 좌파의 경우 대체로 국내보다 유럽의회에서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우파의 경우 영국을 제외하고 국내에 준하는 유럽의회 내 의석점유율을 보여준다. 영국의 경우 보수당이 우파 대신에 극우파 성향으로 연대를 표명했고 국내에서는 의석점유에 실패한 극우파가 유럽의회에서는 중도파보다 약간 우세하다. 더불어 녹색당의 경우 국내와 유럽의회 모두 유럽의회 평균보다 웃돌거나 유사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대조적으로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유럽의회에서는 국내보다 높은 의석점유율을 보이는 영국, 그리스, 스페인 등이 있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서는 녹색당이 국내와 유럽의회 모두 의석점유에 실패했다. 극좌의 경우 핀란드를 제외하고 국내보다 유럽차원에서 우세한 의석점유율을 보여주며,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하고 유럽의회 평균보다 높다. 또한 강성극우파로서 유럽연합의 무소속으로 진출한 정당이 영국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다소 작은 규모로 스페인에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12개국을 살펴보면, 중도파의 경우 유럽의회 평균에 준하거나 높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있으며 특히 에스토니아는 국내와 유럽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중도파가 다수당이다. 슬로바키아의 중도파는 국내에서는 의석점유에 실패했지만 유럽의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한 반면에 키프로스, 몰타,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서는 중도파가 국내와 유럽의회 내에서 미미하다. 좌파의 경우 몰타를 제외하고 국내에 준하거나 국내보다 낮은 유럽의회 내 의석점유율을 보여준다. 몰타는 국내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의석점유율이 비등한 반면에 유럽의회에서는 좌파가 우파보다 우세하며 중도파를 포함해서 이외의 정당은 미미하다. 우파의 경우 유럽의회 평균보다 웃도는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가 있고 유럽의회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보다 우세한 에스토니아가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미미하지만 우파는 유럽의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한 체코의 경우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유럽의회 평균보다 훨씬 높은 극우파가 국내와 유럽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극좌파는 미미한 폴란드와 대조적으로 체코에는 극좌파도 국내와 유럽의회 모두에서 의석점유에 성공했다. 특이한 점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에서는 국내에서도 미미한 녹색당이 유럽의회에서는 평균을 웃도는 의석점유율을 확보했다. 더불어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를 제외한 앞서 기존 15개국과 비교해서 신입 12개국 중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에서는 국내 군소 정당의 의석점유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며, 특히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이 중 강성극우파가 유럽연합 무소속으로 의석점유에 성공했다. 또한 극우파의 경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국내에서는 미미하지만 유럽의회에서는 의석점유율이 높다.

이와 같은 정치성향에 따른 정당 집단별 의석점유율이 국내와 유럽차원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경향과 앞서 논의한 종교적 다양성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나아가 그 상관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유럽의 정체성은 어떻게 유럽의 정치풍경에서 작동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탈세속화된” 유럽의 정체성을 그려내는 유럽 다면성 조립의 정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후속연구를 통해 상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후속연구를 위한 전 단계로서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이 유럽차원의 정당 집단 균열구조를 통해 유럽의 정체성을 조립하는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근대민족국가의 정치적 산물인 시민권이 유럽의 공동체의식 또는 연대의식을 공고하게 만드는 순기능도 가지지만, 반대로 시민권의 정치적 기능이 남용되어 동질화된 유럽의 공동체의식 또는 연대의식을 강요하는 역기능도 동시에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Karolewski 2008).

## V. 맺는 말

‘유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속했는지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형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지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구 소련진영에 귀속된 동유럽(Eastern Europe) 국가의 경우 동서진영 간 대립구도 하에서는 유럽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서유럽이 아닌 동유럽이었으나 이제는 중유럽(Central Europe) 국가로 명명되길 희망한다(Risse 2010, 1-2).<sup>27)</sup> 즉 이러한 지위변동은 바로 동유럽 또는 중유럽도 유럽의 타자(other)에서 벗어나 유럽을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갖

27) 리스는 헝가리 작가 피터 에스터하즈(Péter Esterházy)의 인용문 중 일부를 재인용함.

추졌다는 의지에 기인한다. 이에 더해 시간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유럽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유럽에 기여하는지 또는 유럽을 탄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은 유럽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유럽을 파멸로 몰고 간 결과 오히려 유럽의 정통성이 와해될 위기에 몰렸으나 전후 지역통합 과정에서 독일이 지역 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유럽의 정체성 구축에 토대가 되었다. 즉 전전 독일은 유럽의 정통성이라는 허울에 가려 유럽에서 일탈한 반유럽(anti-Europe)으로서 유럽의 타자(other)로 전락한 반면에 전후 독일은 유럽다운 유럽의 핵심을 구성하였다.

그렇다면 “탈세속화된” 유럽사회에서 유럽의 정체성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앞서 관찰한 내용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종교적 다양성의 분포에서 회교도가 전체인구의 4 또는 5퍼센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문화적 경고등이 켜지며 이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정치세력이 유럽 정체성과의 문화적 충돌로 재포장해 비록 국내에서는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유럽의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하면 유럽 정체성이라는 유럽문제를 정치화할 수 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둘째, 회교도의 인구구성이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대한 찬반의 필요조건이 될지언정 찬반의 충분조건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즉 유럽 정체성의 문화적 갈등이 관찰되지 않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회교도의 전체인구 구성 비율이 아주 낮다. 그렇다고 회교도의 전체인구 구성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럽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가 문화적 다양성을 부인하려는 정치 도구로 재포장되어 정치과정에 부상하지는 않는다. 영국 내 회교도의 인구비율은 덴마크나 스웨덴보다 낮으며 오스트리아의 회교도 비율은 덴마크나 스웨덴과 비슷하고, 심지어 스페인의 회교도 비율은 덴마크나 스웨덴은 물론 영국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주요 양대 정당인 보수당조차 우파 중에서도 더 보수성향이 강한 우파로 정치입지를 굳히고 강력한 반(反)이민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극단적 경도 현상은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정치 시장에 나온 유럽의 사회적 정체성 또는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이 국제화의 물결에 대항하기 위한 산물인 동시에 이슬람권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으로 드러나는 “수세적” 정체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홍태영 2010, 243). 또한 다양한 사회-정치세력이 유럽의 공공영역에서 경합하며 유럽 정체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동유럽-중유럽까지 확대된 유럽의 다면성이 불분명한 유럽의 개념정의를 둘러싼 경계 만들기로 표출된다. 더구나 극소소의 강성 극좌파나 특히 극우파가 일으킨 유럽 정체성을 둘러싼 돌풍에 정치성향의 좌

우를 아우르는 중도파마저 휩쓸린다(Fligstein 2008, 241).<sup>28)</sup>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부 균열을 초래하는 대항적 유럽 정체성을 둘러싼 경쟁은 유럽연합의 기본정신인 “다양성의 연합(union of diversity)”을 저해할 수 있다(Kraus 2008).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현행 유럽의회 선거절차에서 바로 “탈세속화된” 유럽의 정체성과 그를 둘러싼 유럽 다면성 조립의 정치를 역기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기제가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 2002/772/EC)에 따라 유럽议회의 공동 선거절차로서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지만 각 회원국이 자국의 선거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불어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및 영국에서는 국가단위의 단일한 선거구역 대신에 지역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네덜란드에서는 행정적 편의나 정당명부 내 단순한 의석분배 목적으로 국가단위의 단일한 선거구역 획정 대신에 복수의 선거구역 획정을 허용한다. 동시에 각 회원국이 선거구역으로 획정된 최저득표하한선을 4퍼센트(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또는 5퍼센트(독일, 프랑스 등)로 책정하며, 대다수 신입 회원국도 4 또는 5퍼센트의 최저득표하한선을 채택한다. 회교도 인구가 바로 4 또는 5퍼센트의 최저득표하한선을 초과했다는 사실과 국가단위의 단일한 선거구역 대신에 여러 이유로 복수의 선거구역 획정이 허용된 국가에서 강성 극단적 성향의 의원이 당선된다는 사실은 단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 “탈세속화된” 유럽이 부담해야할 정치적 대가가 크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탈세속화된” 유럽의 정체성과 유럽 다면성 조립의 정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할 후속연구는 나아가 “하나의 유럽”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그 후속연구의 동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약하나마 기여한다고 판단한다.

투고일 2010년 11월 30일  
심사일 2010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1년 1월 3일

28) 플리그스타인은 경제적 중산층을 예로 들어 이 계층의 유럽 지역통합에 대한 찬반이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에 결정적 영향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 참고문헌

- 강원택·조홍식. 2009.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서울: 푸른길.
- 김세원. 2004.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서울: 박영사.
- 이규영. 2010. 『유럽통합과정과 지역협력』. 서울: 집문당.
- 이옥연. 2009. “스위스 다문화주의의 도면: 연방 법제도와 정당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9집 5호, 333-355.
- 조홍식. 1998. 『유럽통합의 이론』. 성남: 세종연구소.
- \_\_\_\_\_. 2010. “화폐와 정체성: 유로와 유럽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19집 3호, 73-103.
- 홍태영. 2010. “유럽의 정체성과 문화적 인종주의.” 2010년 한국유럽학회 연례학술대회. 12월.
- Caporaso, James and Alec Stone Sweet. 2001. “Conclusion: Institutional Logics of European Integration.” In Alec Stone Sweet, Wayne Sandholtz, and Neil Fligstein, ed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urope*, 221-236. Oxford: Oxford UP.
- Castiglione, Dario. 2009. “Political Identity in a Community of Strangers.” In Jeffrey Checkel and Peter Katzenstein, eds. *European Identity*, 29-51. Cambridge: Cambridge UP.
- Checkel, Jeffrey and Peter Katzenstein. 2009. “The Politicization of European Identities.” In Jeffrey Checkel and Peter Katzenstein, eds. *European Identity*, 1-25. Cambridge: Cambridge UP.
- Christiansen, Thomas. 2009. “The EU Treaty Reform Process since 2000: The Highs and Lows of Constitutionalising the European Union.” In Anca Pusca, ed. *Rejecting the EU Constitution?: From the Constitutional Treaty to the Treaty of Lisbon*, 29-40. New York: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 Christiansen, Thomas and Christine Reh. 2009. *Constitutionalizing the European Un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ooper, Robert. 2003. *The Breaking of Nations: Order and Chao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Grove Press.
- Dalferth, Ingolf U. 2010. “Post-secular Society: Christianity and the Dialectics of the Secula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8. No. 2, 317-345.
- Fligstein, Neil. 2008. *Euro-Clash: The EU, European Identity, and the Future of Europe*. Oxford: Oxford UP.
- George, Susan. 2008. *We the Peoples of Europe*. London: Pluto Press.
- Habermas, Jürgen. 2008. *Europe: The Faltering Project*. Tr. Ciaran Cronin. Cambridge: Polity.

- Héritier, Adrienne. 2001. "Overt and Covert Institutionalization in Europe." In Alec Stone Sweet, Wayne Sandholtz, and Neil Fligstein, ed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urope*, 56-70. Oxford: Oxford UP.
- Hix, Simon. 2008. *What's Wrong with the European Union & How to Fix It*. Malden: Polity.
- Hosli, Madeleine. 2010. "European Monetary Union and Euro." Manuscript.
- Hynková-Dvoranová. 2009. "The Lisbon Treaty and the Future of EU Enlargement." In Anca Pusca, ed. *Rejecting the EU Constitution?: From the Constitutional Treaty to the Treaty of Lisbon*, 71-87. New York: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 Kaelble, Hartmut. 2009. "Identification with Europe and Politicization of the EU since the 1980s." In Jeffrey Checkel and Peter Katzenstein, eds. *European Identity*, 193-212. Cambridge: Cambridge UP.
- Karolewski, Ireneusz Pawel. 2009. *Citizenship and Collective Identity in Europe*. London: T&F Books, Kindle edition.
- Kraus, Peter. 2008. *A Union of Diversity*. Cambridge: Cambridge UP, Kindle edition.
- Ludlow, N. Piers. 2010. "Governing Europe: Charting the Development of a Supranational Political System." In Wolfram Kaiser and Antonio Varsori, eds. *European Union History: Themes and Debates*, 109-127. New York: Palgrave Mcmillan.
- Mechi, Lorenzo. 2010. "Formation of a European Society? Exploring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In Wolfram Kaiser and Antonio Varsori, eds. *European Union History: Themes and Debates*, 150-168. New York: Palgrave Mcmillan.
- Medrano, Juan D. 2009. "The Public Sphere and the European Union's Political Identity." In Jeffrey Checkel and Peter Katzenstein, eds. *European Identity*, 81-107. Cambridge: Cambridge UP.
- Rasmussen, Morten. 2010. "European Rescue of the Nation-State? Tracing the Role of Economics and Business." In Wolfram Kaiser and Antonio Varsori, eds. *European Union History: Themes and Debates*, 128-149. New York: Palgrave Mcmillan.
- Risse, Thomas. 2010. *A Community of Europeans? Transnational Identities and Public Spheres*. Ithaca: Cornell UP.
- Stjernø, Steinar. 2004. *Solidarity in Europe: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Cambridge UP.
- Sweet, Alec Stone, Wayne Sandholtz, and Neil Fligstein. 2001.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uropean Space." In Alec Stone Sweet, Wayne Sandholtz, and Neil Fligstein, ed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urope*, 1-28. Oxford: Oxford UP.
- Triandafyllidou, Anna. 2010. *Muslims in 21st Century Europe: Structural and Cultural*



*Perspectives*. London: T&F Books, Kindle edition.

Tsebelis, George. 2009. "Thinking about the Recent Past and the Future of the EU." In Anca Pusca, ed. *Rejecting the EU Constitution?: From the Constitutional Treaty to the Treaty of Lisbon*, 42-70. New York: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Walker, Neil. 2007. "Post-Constituent Constitutionalism?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In Martin Loughlin and Neil Walker, eds. *The Paradox of Constitutionalism: Constituent Power and Constitutional Form*, 247-267. Oxford: Oxford UP.

Zowislo-Grünewald, Natascha. 2009. "On Europe's Representation: A Symbolic Interpretation of Rejecting the Constitution." In Anca Pusca, ed. *Rejecting the EU Constitution?: From the Constitutional Treaty to the Treaty of Lisbon*, 16-28. New York: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index.html> (검색일 2010/12/01)

<http://www.europarl.europa.eu/members/expert/groupAndCountry.do?language=EN> (검색일: 2010/12/01)

<http://www.europarl.europa.eu/members/expert/groupAndCountry/search.do?group=2978&language=EN> (검색일: 2010/12/01)

[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expert/displayFtu.do?id=74&ftuId=FTU\\_1.3.4.html](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expert/displayFtu.do?id=74&ftuId=FTU_1.3.4.html) (검색일: 2010/12/01)

<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public/staticDisplay.do?id=45&pageRank=4&language=en> (검색일: 2010/12/01)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RULES-EP&reference=20101110&secondRef=RULE-033&format=XML&language=EN> (검색일: 2010/12/01)

[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iw10/FIW\\_2010\\_Overview\\_Essay.pdf](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iw10/FIW_2010_Overview_Essay.pdf) (검색일: 2010/12/01)

<http://www.ipu.org/parline-e/parlinesearch.asp> 각 국가 하원 최근선거일 (검색일: 2010/12/01)

<http://www.lisbon-treaty.org/wcm/the-lisbon-treaty/treaty-on-european-union-and-comments/preamble.html> (검색일: 2010/12/01)

<http://www.lisbon-treaty.org/wcm/the-lisbon-treaty/treaty-on-european-union-and-comments/title-6-final-provisions/135-article-48.html> (검색일: 2010/12/01)

ABSTRACT

---

## Religious Identity, Political Identity, and European Identity

Okyeon Yi | Seoul National University

A majority of European countries appear committed to the “Union of Europe,” yet we witnessed the convoluted process of rejecting the EU Constitutional Treaty which emblemized the “Union of Europe.” This paper, in particular, explores why and how the calls for European identity fall prey to extremist influences even in the established liberal democracies across Europe. In the subsequent parts of the paper, I will first delineate the functioning of an enlarged EU as laid out in the Lisbon Treaty, followed by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depicted from security and economic perspectives. Then I will look into the multiplicity of Europe, especially in terms of religion in the “post-secular” Europe, and its politics of structuring European identity on the basis of party-group cleavages. In so doing, I purport to propose an ensuing research that systematically analyzes how the post-secular Europe manages to navigate in mapping the meanings of “Europe.”

**Keywords:** religious identity, political identity, European identity, multiplicity of Europe, post-secular Europe